2024년 제1회 미추홀구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4년 제1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19일

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인사위워회위워장

1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	채용직급	인원	기간	근무시간	직무내용
속기사	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	1명	1년	주35시간	각종(본회의, 위원회 등) 회의 시 속기(전자)회의록 등록 및 관리의회 부속실 업무 지원

※ 근무상황 및 업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연장 계약 가능

2 관련근거

- □「지방공무원법」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 □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3조의2(임기제공무원의 종류)
- □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21조의3(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)
- □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21조의4(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)
- □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(행정안전부 예규)
- □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
- □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3 응시자격 (적용기준일: 면접시험일)

□ 공통요건

O 응시연령: 18세 이상

O 성 별: 제한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O 거 주 지: 제한없음

O 국 적: 대한민국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결격사유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 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및 기타 법령 등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

□ 채용분야 자격요건

채용분야	자 격 기 준
속기사	 ▶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*이 있는 사람 *관련분야 실무경력 : 국회, 지방의회,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, 연구소, 대학교, 민간기관 등에서 속기 관련 업무 경력

○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

-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. 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)
-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함 (주40시간 기준)
- ※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.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)
- ※ 전일근무(1일 8시간)가 아닐 경우,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함.

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- 1. 피성년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-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-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- 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-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.
- 1.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2.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3.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4.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-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-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,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
-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
-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-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-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 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-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- 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 - 나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 - 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 - 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 - 마. 삭제 <2022. 1. 4.>
 - 바. 삭제 <2022. 1. 4.>
 - 사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
 - 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 - 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
-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"협회"라 한다)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- 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-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-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-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-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-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-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
- ⑤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-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.

4 보수수준

□ 연봉

채용분야	채용직급	근무시간	연봉액		
속기사	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	주35시간	24,683천 원		

□ 연봉 외 급여

- O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별도 지급
 - ⇒ 가족수당, 초과근무수당, 연가보상비, 정액급식비, 직급보조비 등
- □ 보험가입: 공무원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*
 - * 「고용보험법」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 희망 시.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 가능(단. 최초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)

5 시험일정

응시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	면 접 시 험	최종합격자 발 표		
2024. 5. 1.(수)	2024. 5. 9.(목)	2024. 5월 중	2024. 5월 중		
~ 5. 3.(금)	예 정	예 정	예 정		

※ 공고 및 발표는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홈페이지(michuhol,go.kr/council)에 게시

6 응시원서 접수

- □ 원서교부: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홈페이지(열린의회-공지사항)에 게시
- □ 접수기간: 2024. 5. 1.(수) ~ 5. 3.(금) [3일간, 09:00~18:00]
- □ 접 수 처: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총무팀 1층
- □ 접수방법: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

----- < 방문접수 > --

- 접수시간: 평일 09:00~18:00, **※ 중식시간 12:00~13:00 제외**
- 접수마감일 18: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
- 미추홀구청 종합민원실(1층) 1번창구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수입증지란에 첨부, 의회사무국(1층) 총무팀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
- ※ 가족이 응시원서 제출 시,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지참

< 등기우편 접수 >

-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등기발송 후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전화 확인 바람(032-880-4956)
- : 주소:(22169)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95(숭의동),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임기제채용담당
-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우편통상환(우체국에서 판매)을 구입하여 동봉 (현금 동봉 X) ※ 받는 분 미기재,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
- 우편봉투 겉면에 "2024년 제1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"문구 표기
- 우편 접수 시. 응시표는 이메일로 통보하며 면접시험 시 출력하여 지참
- ※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 정확히 기재

7 시험방법

- □ 1차 시험: 서류전형
 -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
 - ※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
 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제4항)
 - ※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
- □ 2차 시험: 면접시험
 -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인성, 공직관,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(3), 중(2), 하(1)로 평정하여 합계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※ 불합격 기준: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"하"로 평정한 경우와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"하"로 평정한 경우
- 동점자 처리기준: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(상, 중, 하)을 집계하여 "상"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 ※ "상"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. "중"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

8 제출서류 <스테이플러 사용 금지>

- 1) 응시원서(별지서식 1호) 1부-본인 자필로 작성
 - · 수수료: 5,000원(마급)
 - ※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수입증지(인증기증지)를 응시원서에 첨부/ 종합민원실 1번 창구
 - ※ 접수일 현재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 가족증명서를 첨부
- 2) 이력서(별지서식 2호) 1부
 - ·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(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)
- 3) 자기소개서(별지서식 3호) 1부
- 4) 경력증명서 1부(원본지참,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)
 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 - ·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하며, 본인이 해당 직무분야 및 주당 근무시간(예시: 주 20시간)을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접 확인 기재 받아 제출해야 함
 - * 경력 인정 시 주당 근무시간을 환산하여 2,080시간을(52주*40시간) 만족해야 1년으로 인정함
 - · 공공기관이 아니거나 기업의 성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,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등록증·허가증 등 기업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첨부할 것

- ※ 제출된 경력(재직)증명서로 해당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및 경력(재직)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보완할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· 기관의 증명서 양식이 구체적인 업무, 주당 근무시간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(별지서식 7호)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양식으로 제출(인사 담당자 작성, 기관 관인 날인 필수)
- 5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www.nhic.or.kr 에서 출력 가능)
- 6)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별지서식 4호) 1부 자필서명
- 7)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(별지서식 5호) 1부 남성만 제출(병역사항 확인용)
- 8)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서식 6호) 1부
- 9) 최종학력증명서 1부
- 10)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부(원본 지참)
- ※ 방문접수 시 반드시 원본 지참하고, 우편접수 시에는 최종면접 시 원본 지참할 것
- ※ <u>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서류</u>로 제출하여야 하며(시본 제출 시 원본 지참),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(졸업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 <u>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</u>

9 기타사항

	응시희망자는	자격요건	등이	적합한지를	철저히	검토한	후	출원하시	·]フ]
	바랍니다.								
_		-3.3.3.3							

- □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□ 합격 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,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□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안에 반환 가능합니다.
- □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- □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□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□ 응시자(서류전형결과 적격자)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(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)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.

※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기존 서류전형 접수자는 당초 지원서류로 갈음

- □ 본 시험계획 및 면접시험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미추홀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유선으로 개별 안내드립니다.
- □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(채용강요 등의 금지)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(부당한 청탁, 압력, 강요 등을 하는 행위, 금전, 물품,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)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- 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총무팀 인사담당자(☎032-880-4956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.